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12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한정애 · 조인철 · 이병진
임오경 · 이학영 · 박지원
허영 · 이수진 · 김동아
유동수 · 김영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등을 통해 판결서의 방문열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판결서의 원본을 보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의 판결서 열람·복사, 제공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결서 방문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

162조 제2항 등).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제2항 본문 중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를 “대법원규칙으로”로 한다.

제1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대법원규칙으로”를 “국민의 기본권 및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법원규칙으로”로 한다.

⑤ 법원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가 인터넷, 그 밖의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면제한다.

제20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서를 읽거나 점자로

된 판결서를 제공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생략)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u>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u>대법원규칙으로</u> ----- ----- -----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 ④ (생략)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법원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u><신 설></u>	⑥ 제1항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가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⑤ (생 략) ⑥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대법원규칙</u>으로 정한다. 제206조(선고의 방식) (생 략) <u><신 설></u>	<u>그 비용을 면제한다.</u>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 ----- ----- -----<u>국민의 기본권 및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법원규칙으로</u>-----. 제206조(선고의 방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서를 읽거나 점자로 된 판결서를 제공하는 등 <u>대법원규칙</u>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